#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천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84

발의연월일: 2024. 6. 12.

발 의 자:서천호·김선교·이종배

한지아 • 박덕흠 • 엄태영

안철수 · 김장겸 · 장동혁

우재준 • 강민국 • 김예지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우주항공청의 개청으로 우리나라는 글로벌 5대 우주항공강국으로의 도약에 담대한 첫걸음을 뗀 역사적 상황임. 항공우주산업은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방위와 안보의 핵심 축으로서도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.

이에 '우주항공의 날'을 지정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 발전의 기틀을 확립하고 우주항 공강국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, 대한민국 백년대계의 시작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유산인 항공우주산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3조의3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3(우주항공의 날) ① 항공우주산업 발전의 기틀을 확립하고 항공우주산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5월 27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한다.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주항공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우주항공의 날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3조의3(우주항공의 날) ① 항공
	우주산업 발전의 기틀을 확립
	하고 항공우주산업의 성공적인
	추진을 위하여 매년 5월 27일
	을 우주항공의 날로 한다.
	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
	주항공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
	행사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	③ 제2항에 따른 우주항공의
	날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
	<u>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</u>
	<u>한다.</u>